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6호의5서식] <개정 2025. 3. 21.>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#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| | | |
|---|---|---|
| 연결 모법인 | ① 사업자등록번호 | ② 법인등록번호 |
| | ③ 법인명 | ④ 전화번호 |
| | ⑤ 대표자 성명 | ⑥ 전자우편주소 |
| | ⑦ 소재지 | |

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⑧ 연결사업연도 | . . . ~ . . . | ⑨ 법인종류별 구 분 | 중소기업 | 일반기업 | | | ⑩ 조정구분 | 1. 외부, 2. 자기 |
| | | | | 중견기업 | 상호출자제한기업 | 그 밖의 기업 | | |
| | | | 30 | 73 | 83 | 93 | | |
| ⑪ 신고구분 | 1. 정기신고 2. 수정신고(가. 서면분석, 나. 기타) 3. 기한 후 신고 4. 경정청구 | | | | | | | |
| ⑫ 신고일 | | ⑬ 신고기한 연장승인 | 1. 신청일: | | 2. 연장기한: | | ⑭ 사업연도의제 | 1. 적용 2. 미적용 |
| ⑮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| | 1. 해당, 2. 미해당 | | | | | | |

| 구분 |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|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|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⑯ 연결수입 금액 | ( ) | | | |
| ⑰ 연결과세표준 | | | | |
| ⑱ 연결산출세액 | | | | |
| ⑲ 총부담세액 | | | | |
| ⑳ 기납부세액 | | | | |
| ㉑ 차감납부할 세액 | | | | |
| ㉒ 분납할 세액 | | | | |
| ㉓ 차감납부세액 | | | |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㉔ 조정반 번호 | | ㉖ 조정자 | 성명 | | |
| ㉕ 조정자 관리번호 |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 |
|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| ㉗ 예입처 | 은행 (본)지점 | ㉘ 예금종류 | 예금 | ㉙ 계좌번호 |

신고인은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7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**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**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**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**세무서장** 귀하

## 신 고 안 내

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·군·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.

|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<br>2. 각 연결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<br>3.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 | 수수료<br>없 음 |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## 작 성 방 법

※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1. ① 사업자등록번호란, ② 법인등록번호란, ③ 법인명란, ④ 전화번호란, ⑤ 대표자성명란,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: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2. ⑧ 연결사업연도란: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3. ⑩ 조정구분란, ⑪ 신고구분란: 각각의 해당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4. ⑨ 법인종류별구분: ‘중소기업’과 ‘중견기업’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(연결집단용)(별지 제76호의18서식)상 적합 기업, ‘상호출자제한기업’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   - "중소기업"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"○"표시합니다.
5. ⑬ 신고기한 연장승인란: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.
6. ⑭ 사업연도의제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(사업연도의제)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"1. 적용"에 체크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"2. 미적용"에 체크합니다.
7. ⑮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란: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(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)에는 "1. 해당"에 체크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"2. 미해당"에 체크합니다.
   가.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를 초과할 것
   나.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,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및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50% 이상일 것
   다.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
8. ⑯ 연결수입금액란: 연결법인들의 연결(모·자)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(별지 제76호의22서식) ㉖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.
9. ⑰ 연결과세표준란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⑥란의 모법인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㉖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0. ⑱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⑧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㉘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1. ⑲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⑭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㉑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㊷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㉜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2. ⑳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⑳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㉝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13. ㉑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⑲ 총부담세액에서 ⑳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14. ㉒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㊺ 분납할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5. ㉓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㊻ 차감납부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16. ㉔ 조정반 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.
17. ㉕ 조정자 관리번호란, ㉖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.
18. ㉗ 예입처란, ㉘ 예금종류, ㉙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19. 음영(■)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